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장 규 원**

국 | 문 | 요 | 약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여러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이다. 많은 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피해자의 권리로 인식하고, 법률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청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피해자가 제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대접받는 것이다. 이러한 처우의 전형적인 경우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정보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는 곧 피해자를 단순한 증거의 일부분으로 여기던 생각에서 당해 형사사건절차의 진행상황이나 가해자의 현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 또는 정보 청구의 권리로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외에도,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 피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또한 구체적이다. 예컨대 가해자의 인적 정보(성명이나 주소 등), 체포여부, 수사의 진행정도, 사건의 전모, 기소여부, 재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의 참여방법, 가해자의 석방여부, 판결 결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피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형사실무는 범죄피해자의 정보요구 등에 충분하지 못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피해자의 정당한 기본권으로서 정보권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집행절차 등에까지 넓혀 생각하여야 한다.

가해자의 정보제공에는 균형감 있는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가해자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여기서

* 이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중점을 두고자 한 운영 사례는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VNS)이다. 인터넷망으로 연계하여 형사절차 각 단계마다 제공하는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가 원하는 때, 사안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보기가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피해자정보제공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정보제공, 범죄피해자, 피해자통지시스템, 프라이버시, 알 권리

I. 머리말

인권은 참으로 인기 있는 화두이다. 사람마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¹⁾ 단순히 보이는 정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인간다운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인간다운 삶을 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살 곳이 있어야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필요한’이란 어떤 의미를 새길 수 있을까. 필요란 반드시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는 곧 시급과 선후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천천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당장) 요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최소한’이라는 말의 의미도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에서의 최소한은 ‘적어도 이 정도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피해자 인권, 피해자 권리를 다루고자 한다. ‘피해자의 재발견’이라고들 이야기 하듯이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서 피해자 권리가 논의되고 있다.

1) 조효제 옮김(Micheline Ishay), 세계인권사상사, 2005, 36쪽 이하; 조효제, 인권의 문법, 2007, 113쪽 이하 참조.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청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피해자가 잊힌 존재가 아니라,²⁾ 제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대접받는 것이다. 이러한 처우의 전형적인 경우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정보권을 보장받는 것이다.³⁾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권은 헌법 제10조에 담겨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며, 범죄피해자가 당사자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및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의 필수요건이다. 피해자의 정당한 기본권으로서 정보권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곧 피해자를 단순한 증거의 일부분으로 여기던 생각에서 당해 형사사건절차의 진행상황이나 가해자의 현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집행절차 등에까지 넓혀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제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의할 것은 ‘피해자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듯이 어떠한 새로움에 들떠 그동안 다져왔던 가해자(또는 범죄자, 행위자)의 인권, 권리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⁴⁾ 비교고찰을 통해서 균형감을 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대상이 된 국가는 미국이다.⁵⁾

2) Stephen Schafer, *The Victim and His Criminal: A Study in Functional Responsibility*, 1968; Andrew Karmen, *Crime Victims*, 2009, pp.48-49.

3) Jonathan Doak, *Victims' Rights,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2008; Andrew Karmen, *ibid*, pp.148-149, 372.

4) 사전적 의미로 범죄자, 행위자, 가해자의 뜻을 살펴보면, 범죄자(犯罪者)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행위자(行爲者)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형사법에서는 범죄 또는 개별범죄구성요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란 뜻으로 새길 수 있겠다. 그리고 가해자(加害者)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학에서 말하는 피해자(被害者)와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페미니즘의 영역에서는 피해자에서 말하는 그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또는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존자(生存者, survivor)를 이야기한다. 이 영역에서 피해자(victim)는 아직 생존자로서 정체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이다(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전병욱 옮김, 용서: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 양철북 펴냄, 2009 참조). 여기서는 피해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가해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여기서 중점을 두고자 한 사례는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VNS)이다.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우이기에, 그리고 이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우리의 경우라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⁶⁾ 인터넷망으로 연계하여 형사절차 각 단계마다 제공하는 가해자의 정보, 절차에 관련된 정보 등을 피해자가 원하는 때, 사안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보기가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VNS)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생각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머리말에 이어 두 번째 장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란 제목으로 피해자통지시스템, 범죄피해자통지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세 번째 장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정보공개의 한계 등을 짚어보고, 우리 사정에 맞는 피해자통지시스템을 제시하였다.

II. 미국의 정보공개

미국은 1982년 피해자와 증인보호법(Victim/Witness Protection Act), 1984년 범죄피해자법(VOCA), 1990년 범죄통제법, 1994년 폭력범죄통제와 집행법, 2004년 범죄피해자 인권법(CVRA), 그리고 피해자와 증인지원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침

5)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예컨대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경우는 장규원·윤현석,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정보제공 방안(2009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한국피해자학회, 2009 참조

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해서는 양문승·장규원·류인모·천진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과 관련한 쟁점사항 및 근거규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참조. 2010년 5월부터 형사사법 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을 전자화해서 서로 연계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 법률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9942호, 2010.1.25)이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음주·무면허 등 전형적인 약식절차사건부터 종이 없는 사이버 형사재판시대를 여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 2010.2.4)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립했으며,⁷⁾ 각각의 법은 피해자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중요한 단계와 절차에 관한 정보의 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지 내용으로 수사상황 · 기소 · 재판 · 구금, 그리고 가해자의 위치와 구금 상황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사 · 기소 · 구금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을 위해 대표적인 것으로 연방과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VNS), 범죄피해자통지시스템(Crime Victims Notification, CVN), 피해자정보 및 통지시스템(Victims Informations and Notification Everyday, VINE)이 있다. 이들 각 시스템의 운영 형태와 차이는 다음과 같다.⁸⁾

가.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미국연방검찰청(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s, EOUSA)에서 관리하는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VNS)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사법 자료 센터(Rockville 소재)에 위치한 서버와, 켄터키 주의 통화 센터 시설(Louisville 소재)과 실시간 백업 서버로 구성되어 연방수사국(FBI), 연방검찰, 법무부 형사국(Criminal Division), 미국우편물검열국(United States Postal Inspection Service, USPIS)과 연방교정국(Federal

7) Andrew Karmen, *ibid*, pp.361, 362-264, 375, 379.

8) 이에 대해서는 Audit Report 08-04, "The Department of Justice's Victims Notification System",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udit Division, 2008; www.oag.state.tx.us/victims/cvn.shtml (accessed: August 25, 2009); www.mdoc.state.ms.us/Victims Notification Form.htm (accessed: August 27, 2009); www.michiganprosecutor.org/VictLink.htm (accessed: August 20, 2009); www.tuscolacounty.org/victim_services/cvn.php (accessed: September 8, 2009); www.vinelink.com (accessed: September 10, 2009); www.ojp.state.mn.us/MCCVS/VictimNotification (accessed: August 27, 2009); www.orangecountyfl.net/cms/VINE.htm (accessed: September 14, 2009)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편 각 조직 용어는 다음의 문헌(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포함)을 참조하였다. 가능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번역례에 따랐으나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2008; 박주인, 미국의 검사제도 (<http://minbyun.org>); 장규원 · 윤현석, 앞의 보고서, 2009;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2004.

Bureau of Prisons, BOP)의 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통지시스템은 연방수사국의 자동화사건지원시스템(Automated Case Support, ACS), 미국우편물검열국의 검역 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Inspection Serv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SIIS), 미국 연방검찰의 법률정보네트워크시스템(Legal Information Office Network System, LIONS), 법무부 형사국의 자동화사건추적시스템II(Automated Case Tracking System II), 연방교정국의 SENTRY에서 자료를 받는다.⁹⁾

각각의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정보에는 사건번호, 피해자·피고인 그리고 수용자 정보, 사건 내역, 그리고 구금 상황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가 포함된다.

피해자통지시스템은 사용자가 보안 인트라넷 연결을 통해 접속하는 콜 센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통지시스템의 사용자의 암호화된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인터넷시스템(Victim Internet System, VIS)의 방식도 개발되었다.

연방수사국 피해자 전문가와 미국연방검찰의 피해자·증인 조정위원들과 같은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 특화된 연방피해자통지시스템 담당자들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통지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피해자통지시스템에 가입된 피해자들의 사건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이메일·팩스·전화로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피해자통지시스템 콜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인터넷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9) 자동화사건지원시스템(ACS)은 1995년 FBI에서 개발한 수사 기록 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검역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ISIIS)은 미국우편물검열국(USPIS)에서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수사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우편 관련 범죄(우편 사기, 신분 절도, 자금 세탁 등)와 관련된 정보(차량 정보 포함)를 수집, 저장, 관리한다. 법률정보네트워크시스템(LIONS)은 미국연방검찰에서 사용하는 사건 관리 시스템으로 민사,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을 추적 기록하고, 이를 범죄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통지시스템(VNS)이 가동하면서 고지 기능은 VNS로 이전되었으나, 사건 추적과 관련 기록을 연방기록센터(FRC)로 보내는 기능은 남아있다. 한편 자동화사건추적시스템 II는 미국 법무부 형사국(Criminal Division)에서 운영 중인 사건 추적 시스템이다. 1978년부터 연방교정국에서 연방교정시설 수용자 감시와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감시 시스템(SENTRY)은 특정한 시설에 수용자를 배정하고, 수용자들에게 부과된 형기의 관리와 감시, 특수 처우가 요구되는 수용자 관별, 시설 내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법정 명령에 의거하여 수용자가 저야 하는 재정적인 책임 등을 기록, 관리한다.

(1) 피해자통지의 흐름

피해자통지시스템을 통해 범죄피해자는 편지·팩스·이메일·전화와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 받는다. 또한 피해자통지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사건에 관련된 정보에 접속하며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인터넷시스템에 접속하거나 피해자통지시스템 콜 센터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피해자통지시스템에 가입·의사표시를 하여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한 후부터 미국연방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될 때까지, 연방수사국과 미국우편물검열국만이 수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피해자통지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일한 연방법집행기관이다. 연방수사국과 미국우편물검열국은 해당 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피해자통지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시켜 제한된 사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연방수사국과 미국우편물검열국은 피해자통지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이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리고, 법률상 권리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사건이 주나 지방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작성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위해 피해자통지시스템을 사용한다.

연방검사가 기소하는 때부터 피고인이 선고를 받을 때까지, 연방검찰청은 자신들의 자동화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피해자통지시스템으로 전송시켜 이전에 연방수사국이나 미국우편물검열국에 접수 기록된 사건이나 연방검찰청에서 수사한 새로운 피고인, 기소, 그리고 법원 사건 기록과 사건 자료를 포함한다. 연방검찰청은 제기된 기소, 심리 날짜, 구금 상황, 그리고 판결 정보와 같은 사건에 국한된 정보와 피고인과 관련된 90여개의 다른 통지가 있다.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연방교정국 수용시설로 이송되는데 연방교정국은 감시시스템(SENTRY)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수용자의 석방, 탈옥, 또는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2) 피해자 인터넷 시스템(Victim Internet System)과 콜 센터

피해자인터넷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통지시스템 자료에 피해자들이 접속

할 수 있게 하는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다. 인터넷 기반 피해자인터넷시스템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전화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동화된 응답 시스템 또는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통지시스템 콜 센터는 자동화된, 무료 전화 응답 시스템과 피해자들에게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응답기 소리로 정보 내용을 읽어주지만, 교환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제한된 수의 질문에만 답하고 추가적인 사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 장소를 가리켜준다.

콜 센터는 현재 가해자의 구금 상태, 현재 사건의 조사 상태, 사건에서 이루어진 체포, 판결 정보, 피고인의 교섭, 다음 심리의 종류와 일자, 수형자 소재에 관한 정보, 예정된 수형자 석방 날짜와 관련된 사건에 맞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지원을 위한 연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피해자통지시스템 정보의 정확성

형사절차 단계별로 정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이들 자료가 피해자통지시스템에 업로드될 때 피해자 정보가 피해자통지시스템에 전송되며, 초기 기록이 업로드 과정을 통해 피해자통지시스템에 작성된 후에도 그에 소속된 모든 기관은 피해자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통지시스템 사용자 중 더 이상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사건에서 피해자를 제외하는 선택권도 있다.

피해자통지시스템에서 피해자 기록은 자동적으로 수사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원 사건으로 연결되며 관련된 모든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해 일이 발생하면 각각의 피해자는 통지를 받으며, 비참여 수사기관들을 위해 사건을 기소하는 연방검찰청에서 사건 관리 시스템인 법률정보네트워크시스템(LIONS)에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을 작성한다. 또한 피해자 관련 정보가 법률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피해자통지시스템에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통지시스템 웹사이트나 연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증인 조정위원회에게 연락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나. 범죄피해자통지(Crime Victims Notifications)

범죄피해자통지(Crime Victims Notifications, CVN)는 범죄피해자에게 미국 각 주에서 벌어진 범죄에 관한 정보와 통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이다.¹⁰⁾ 피고인이나 수형인의 구금 상태와 법정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콜 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응답이나 상담원에게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감자 번호나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이용하고, 범죄피해자통지 네트워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상태와 법정 사건, 구금과 심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다. 추가로,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구금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자동 전화 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스템은 비밀이 보장되며 검사와 주 교정국에서 범죄피해자 등록을 돕는다.

정보는 카운티 구치소나 주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법정 정보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콜 센터로 직접 네트워크를 통한 핫라인으로 전화할 수 있으며 자동 지시에 따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판 일정의 변화에 관한 네트워크 고지를 받기 위해 범죄피해자는 검사에게 피해자 등록을 하고, 또한 주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의 구금 상태 변화에 관한 고지를 받기 위해서 범죄피해자는 미시간 주 교정국에 등록을 실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피해자정보 및 통지(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피해자정보 및 통지(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VINE)는 형사사건과 가해자의 구금 상태에 관해 24시간 전화 · 인터넷 · 이메일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¹¹⁾ 연방피해자통지시스템의 백업 서버와 콜 센터를 유지하는 기관(Appriss)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몬태나 주,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뉴멕시코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조지아 주,

10) www.michigan.gov/documents/notify (accessed: August 29, 2009).

11) www.appriss.com/sitedocs/VINECutSheet.; www.appriss.com/sitedocs/VINEServiceOfferings (accessed: August 30, 2009)

매사추세츠 주 등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정보 및 통지(VINE)는 실시간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의 기록 작성 시스템과 통신하여 갱신된 정보를 Appriss Data Network로 전송하며, 범죄피해자와 일반 국민은 아무 때나 지역 무료 통화 번호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www.vinelink.com)로 접속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수감 중인 시설의 위치도 알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석방·이송·탈옥과 같은 가해자의 상태 변화를 즉시 자신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의 보호관찰자와 가석방자 추적이 피해자들을 위해 추가되었으며, 피해자정보 및 통지(VINE)에서 제공하는 보호관찰과 가석방 정보에는 감독 보호관찰소의 변경·도망자·도망자의 체포 및 구금 상태 복귀와 기술적 위반자의 구금이 포함되어 있다.

III.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정보제공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여기서는 좀 큰 틀의 개인정보의 한계를 짚어보면서 그 문제와 한계를 가늠하고자 한다.¹²⁾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들이 증대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의 한계 문제는 더욱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정보의 프라이

12)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는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2009;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 2009;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2009; Beate Rössler, Der Wert des Privaten, 2001; Daniel Solove, The Digital Person: Technologz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2006; Jonathan Doak, Victims' Rights,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Reconceiving the Role of Third Parties, 2008; Reg Whitaker, Das Ende der Privatheit. Überwachung, Macht und soziale Kontrolle im Informationszeitalter, 1999 참조.

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³⁾

그러면 먼저 왜 사람들은 정보공개(제도)를 요구하는가?¹⁴⁾ 알아야 할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흔한 말로 정보공개(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현실로 만드는 제도이다. 정말 국민이 주권자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나 정보공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해석에 의해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전문, 국민주권원리(제1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제1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1989.9.4. 88헌마22).

이제 헌법의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정보공개청구 내지 요구권은 오랫동안 가꾸어 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청구권과 충돌할 때와 같이 프라이버시와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가?

정보를 공개하고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인격과 자율을 꺾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다.¹⁵⁾ 은폐성과 개방성은 정보공개(제도)의 이중적인 측면이다. 개인의 자율은 자신에 관해 모든 것을 감추거나 드러낸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은폐와 개방은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프라이버시는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자율과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야 할 규범적 가치이다.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공개할 경우 그 범위와 정도에 관한 사회 합의가 분명 필요하다.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가족 소득, 취미 등과 같은 개인 정보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요구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사회 요건과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정보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

13) 이에 대해서는 이진우, 앞의 책, 2009 참조.

14)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하승수·조영삼·성재호·전진환, 정보사냥, 2009 참조.

15) 이진우, 앞의 책, 2009, 241-244, 261-262쪽 참조.

16) Beate Rössler, a.a.O., 2001, S.209.

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보의 프라이버시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제공의 한계

피해자 권리에 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 우려가 한둘이 아니다.¹⁷⁾ 범죄자 처벌의 효과(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결과에 만족을 느끼는 것)와 범죄자 처벌의 목적(즉 범죄자에게 그가 받아야 마땅한 벌을 주는 것)의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보면 헛갈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를 ‘범죄를 심판하는 과정의 한 가운데’에 놓는 일은 위험하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보다 피해자의 심리 욕구가 우선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건의 전말을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수긍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사법의 숭한 원칙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흔들림의 예는 많다. 우리는 어느 누가 어디를 가고 아무개가 어제 저녁 무엇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일상적인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리마다 CCTV로 가득하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대접받아야 하지만 도시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환경이 되어버렸다. CCTV 아래를 용케 피해 지나가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내지는 인터넷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위 갑돌이와 갑순이의 행적은 낱알이 드러난다. 누구든 빅브라더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파놉티콘(Panopticon)에 갇힌 꼴이다. 보이기 싫을 때도 있고, 들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론 감출 수도 있어야 한다.

신상공개도 개인정보공개의 문제와 한계를 고민하게 하는 영역이다.¹⁸⁾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보호를 위한 수단이며, 이런 점에서 형벌은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을 동시에 추구한다. 신상공개는 외형적으로는 단지 사실상의 정보제공의 형태

17) 안진환 · 이수경 옮김(Michael J. Sandel), 왜 도덕인가?, 2010, 52-57쪽 참조.

18) 장규원 · 윤현석, 앞의 보고서, 2009, 79-87쪽 참조.

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봉쇄하는 치욕형적인 특징을 가진다.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의 특징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써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그 위하적인 효력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범죄 충동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신상공개는 일반예방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지, 범죄자의 교화 및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라는 특별 예방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일반인은 신상공개를 두려워하지만, 일단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에게 신상공개라는 수단은 이전의 위하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위하적인 형벌집행을 통해 일반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 예방적 형벌이론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잠재적인 일반인을 위하하기 위해 범죄인을 처벌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상공개는 전형적으로 19세기의 일반 예방적 형벌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6호, 2010.3.22)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고 있다(제2조 참조). 구체적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에 대한 가장 사적인 정보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일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사상과 감정은 특정한 범위와 한계 안에서만 일반화되고 객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는 항상 개인의 의지와 지식이 개입한다.

개인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 예를 들어 개인의 이름, 출생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은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고 또 타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알지만, 유통을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의 유출은 반드시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전제한다. 한편 공적 생활 정보, 예컨대 폐쇄회로를 통한 정보수집, 유출은 언제든지 개인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적인 정보들

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적 생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¹⁹⁾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의지에 관계없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도덕적·법률적 장치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²⁰⁾

다. 입법론적 방안

(1) 피해자 권리고지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

범죄피해로 불안해하고 향후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무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자지원 정보를 수사경찰이 현장 출동 당시에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원호기관 등을,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절차의 진행경과, 피의자 검거 및 신병처리 여부, 배상명령 신청 절차, 피의자의 기소여부, 피의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제9139호, 2008.12.19) 제15조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내용, 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 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법 제15조 규정 중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와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수사경찰의 가치판단을 요구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임의 규정의 형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이론에 의하면 어떤 행정행위의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19) 이진우, 앞의 책, 217-218쪽.

20)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한계에 대해서는 임규철, 개인정보와 법, 2009, 37쪽 이하 참조.

개념에 대한 판단이 당해 행정기관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판단사항이 아니라면 그 행정청의 요건에 관한 재량행사도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통지할 수 있다’ 라고 한 규정도 보호법익의 성격상 일정 요건이 존재하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특별법상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정보제공 의무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의 충실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도 입법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2)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범위와 가해자 정보제공 기관의 지정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여기서 수사 진행상황·체포·사실인정 여부·판결내용·석방가능시기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사기밀누설이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 없이 통지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알권리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된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사건의 진전과 결과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불기소처분 이유 및 재판의 결과에 대한 통지, 피고인 관련 상황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보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관이 사건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피해자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1)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

체계적인 피해자 사건 관리 시스템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에서 범죄피해

자 및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인권보호센터, 검찰의 피해자인권국, 교정본부의 보안과, 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수사·기소·구금·석방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의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보제공의 내용에는 수사상황·기소·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이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시스템화 해야 된다.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은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에서 사건 번호, 피해자·피고인 그리고 수감자 정보, 법원 사건, 그리고 구금 상황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가 포함되고 사용자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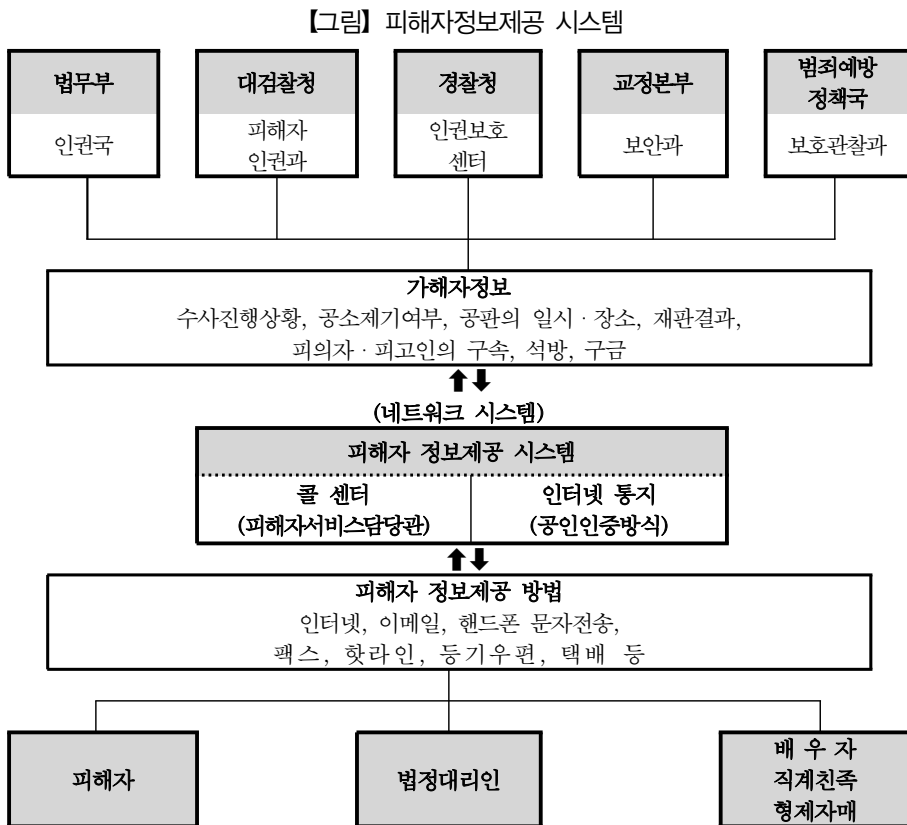
피해자 서비스 담당관으로 운영되는 콜 센터 방식과 공인인증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암호화된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제공하며 특화된 형사사법 직원들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한다. 특히,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에 가입된 피해자들의 사건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이메일·팩스·전화·문자 메시지로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콜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형사절차단계별로 살펴보면 ① 수사 단계로 경찰에서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범죄사건 정보 및 조사에 해당하는 수사진행상황을 제공하고 만약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통지서를 작성해 등록한다. ② 기소 단계에서는 범죄 사건에 관한 새로운 피고인, 기소, 그리고 법원 사건 기록과 사건 자료를 포함시켜 등록하며 제기된 기소, 심리 날짜, 구금 상황, 그리고 판결 정보와 같은 사건에 국한된 정보를 등록한다. ③ 구금 단계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피고인의 석방, 탈옥, 또는 사망과 관련된 정보 등을 등록해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의 콜 센터는 피해자들이

무료 전화를 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자동화된 응답 시스템 또는 교환원들과 이야기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자동화된, 무료 전화 응답 시스템과 피해자들에게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환원들로 구성한다.

이 자동화 시스템은 ① 현재 가해자의 구금 상태, ② 현재 사건의 조사 상태, ③ 사건에서 이루어진 체포, ④ 판결 정보, ⑤ 피고인이 한 교섭, ⑥ 다음 심리의 종류, ⑦ 다음 심리의 날짜, ⑧ 다음 심리의 시간, ⑨ 수형자 위치, ⑩ 예정된 수형자 석방 날짜와 관련된 사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지원을 위한 연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 피해자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사건 관련 정보를 얻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그림> 참조).



(2) 피해자상담전용전화의 일원화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부담이나 불안을 덜어드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청 안에 피해자지원실과 피해자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상담 전용전화는 국번 없이 1301-95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로 연결되어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여성성폭력 및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588-9222) 등의 범죄피해자상담 전용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청의 1301-95를 제외한 피해자상담전용전화는 종합방재센터인 119에서 통합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물론 1301-95를 홍보하여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야 하지만 다급한 상황이나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119에서 피해자 전용전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범죄피해자의 사건 신고 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를 연결해주고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센터 등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원화 전화 연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피해자상담전용전화에 대한 범죄피해자 핫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의 연락체계 형성

범죄피해자 진술권, 피해자 연락제도 등 피해자가 형사소성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며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와 상호연락을 계속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결과 및 자신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소를 제기할 때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4) 수사과정 정보 취득권 도입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사기관은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적절히 조정해 줄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형사소송법 제259의2)를 인정하고 있고, 주로 구금에 관한 사실과 기소여부 내지는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에 대한 통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사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수사과정 정보 취득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검찰의 원스톱 서비스제도

형사소송법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종결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를 검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의 진전단계에 대한 사항을 고지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견진술권이나 배상신청권 등의 권리를 알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권리실현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제반 권리를 고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권리를 고지할 의무와 사건의 진전단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당연히 형사사법기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단계, 공판절차 및 형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 전 단계에 걸쳐 사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기관인 검찰이 사건의 진행단계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구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재판, 형집행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의 경과를 검찰을 통해 고지 받게 되므로 정보창구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검찰의 원스톱서비스제도라고 명명해 보았으며 검찰의 원스톱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피해자에게 일련의 고지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프로그램화하여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6) 피해자지원안내서 개선

현재 경찰청에서 발행한 ‘범죄피해자보호제도, 알아두면 도움 됩니다’라는 인권

매뉴얼이 있다(2003년 9월 발행자료). 이 안내책자에는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 위한 각종제도, 주요 피해자지원관련단체 연락처 안내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자는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할 전용 안내책자로 쓰이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한 범죄피해자지원관련단체의 안내는 매우 유용하나 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그러한 권리로부터 범죄가 신고된 후 형사사법체제 내에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피해자에게 권리를 고지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사건에 관한 정보제공이 필요적 임무라면 영국의 리플릿 시스템을 사례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책자나 리플릿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이 권리가 형사사법체제 내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국가와 사회가 범죄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심리적 안정과 매스컴 대책, 형사사법의 절차와 정보제공, 법률 및 의료지원 안내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요구가 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주며 사건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질 못한다.

상당히 많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에 위치해 있는바 아무래도 형사사법기관의 직원보다 민간단체에서 상담이나 피해자서비스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직원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수사진행상황,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항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해 주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범죄사건에 진행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활동, 현장지원 및 의료지원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한을 적시에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필수요건으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지향된 소극적 지위에 있어서 효율적 방어를 위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절차참여를 비로소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이며 범죄피해자들은 그들이 당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는 외에도,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 한다. 즉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체포여부, 수사의 진행정도, 사건의 전모, 기소여부, 재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의 참여방법, 가해자의 석방여부, 판결 결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이 그것이다.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범죄피해자 당사자에 관한 사건에 있어 피해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추상적·구체적 불안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되며,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및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의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정보제공 방안을 위한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 및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정보제공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VNS)을 모델로 운영 도입방안으로 고려하였고,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 및 상황을 바탕으로 한 도입과 정보제공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검토와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펴냄, 2008.
-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개 펴냄, 2009.
- 안진환 · 이수경 옮김(Michael J. Sandel), 왜 도덕인가?, 한국경제신문 펴냄, 2010.
- 양문승 · 장규원 · 류인모 · 천진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과 관련한 쟁점사항 및 근거규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6.
-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 돌베개 펴냄, 2009.
-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돌베개 펴냄, 2009.
- 임규철, 개인정보와 법, 보명 북스 펴냄, 2009.
- 장규원 · 윤현석,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정보제공 방안(2009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한국피해자학회, 2009.
- 조효제 옮김(Micheline Ishay),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펴냄, 2005.
- 조효제, 인권의 문법, 휴머니타스 펴냄, 2007.
-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살림 펴냄, 2004.
- 하승수 · 조영삼 · 성재호 · 전진한, 정보사냥, 환경재단 도요새 펴냄, 2009.
-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Seventh Edition,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09.
- Beate Rössler, Der Wert des Privat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1.
- Daniel Solove, The Digital Person: Technologz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 Jonathan Doak, Victims' Rights,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Reconceiving the Role of Third Parties, Oxford and Portland: Hart Publishing, 2008.
- Reg Whitaker, Das Ende der Privatheit. Überwachung, Macht und soziale Kontrolle im Informationszeitalter, München: Kunstmann, 1999.
- Stephen Schafer, The Victim and His Criminal: A Study in Functional Responsibility, New York: Random House, 1968.

A Study on Crime Victim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Chang, Gyu Won*

Criminal victims are entitled to right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related laws in society, and the fundamental rights they are entitled to include being supplied with necessary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 who has inflicted damages on him or her. There a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consider the provision of critical information about assailants to the victims to be the basic rights of victims. As the result of this recognition, these countries make it a legal stipulation in their laws, and have support systems to this effect.

Victims need to be respected and treated properly in the whole gamut of criminal judiciary procedures so that they may have their fundamental rights protected in essence. A typical example of this treatment is the legal guarantee of the supply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about the assailants to the victims. This attempts to consider a victim one who has an inalienable interest in matters regarding what goes on with the prosecution proceedings on criminal judiciary and how the criminal prosecuted is dealt with,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ast practise that saw a victim just part of witnesses.

Balanced comparative understanding should be implemented when one attempts to supply victims with the information about an perpetrator.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o look into what other countries attempt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to know all necessary information about wrongdoe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assailants to the victims. We will be able to eliminate problems and reduce limit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assailants to the victims by dint of a comparative study of the support

*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Division of Police Science

systems for victims of other countries and those of our country. This efforts will help us find ideas on how to improve our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assailants to the victims, this paper places in particular emphasis on VNS(Victim Notification System) as an example, a system implemented in America. A more active use of internet networks will help the legal enforcement authorities supply victims with necessary information at every stage of the procedures of criminal action regarding lawsuit procedures when they are in need of it.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new and feasible system by dint of the Internet will make it possible to do so. The VNS serves an exampl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providing victims with sufficient amount of necessary information about perpetrators when they are in need of it based on VNS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merica, introduce a Korean version of VNS which is feasible in Korea.

❖ Key words : provision of information, crime victims, victim notification system, privacy, rights to know